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-20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3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- 가. 새로운 주민으로 원활한 순환 위촉으로 많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·참여와 책임감 고취
- 나. 해촉 및 사임위원 재위촉 시 경과규정을 두어 신규위원 참여의 폭을 넓히고, 위원의 책임감과 자부심 고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별도고문의 연임 제한
 - 1)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
 - 2)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위원장을 연임
- 나. 임기만료 및 해촉(사임) 위원 재 위촉시 만료 또는 해촉(사임)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자격 부여
- 다. 현재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별도고문이 이 조례시행 후 연임 위촉되는 경우 개정조례 적용

3. 개정근거

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1. 2. 24. ~ 2011. 3. 15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이상없음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11. 3. 22)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- 마. 신 · 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구성등”을 “구성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

3. 위원으로 사직이나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사직 또는 해촉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

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2.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 등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또는 별도 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현재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별도고문이 이 조례시행 후 연임 위촉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구성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동장은 <u>당해</u>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 <u>(신 설)</u></p>	<p>제17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해당</u>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위원으로 사직이나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사직 또는 해촉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③ ~ ⑥ (생 략)</p> <p>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2.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
<p>⑧ ~ ⑩ (생 략)</p>	<p>⑧ ~ ⑩ (현행과 같음)</p>